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환경영향평가법」 개정(법률 제20518호, '24.10.22. 공포, '25.2..21. 시행)에 따라 재협의 요청 대상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 등(안 제54조제1항)

협의 이후 사업이 취소·실효·지연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1항 중 “법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”을 “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로, “이란”을 “이란 각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법 제32조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32조제1항제4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32조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32조제1항제5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2조제1항제4호”를 “법 제32조제1항제6호”로 한다.

제54조의2를 삭제한다.

제61조의2 중 “법 제44조제3항제1호”를 “법 제44조제4항제1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변경하는 경우”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(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④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· 2. (생략)

제54조의2(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) 법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.

제61조의2(소규모 환경영향평가
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) 법
제4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
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

[illegible]

④ 법 제32조제1항제6호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54조의2(환경영향평가의 재협
의 생략) <삭 제>

제61조의2(소규모 환경영향평가
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) 법
제44조 제4항 제1호 -----

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.

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281